

변경 보고서

1. 펀드명 : 칸서스 하베스트 선취형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2. 주요 변경 사항

: 운용전문인력 변경

구분	기존	변경
책임운용인력	유승우	김관오
부책임운용인력	차진호	최재혁

3. 변경 시행일: 2014년 5월 13일. 끝.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

칸서스자산운용(주)

1. 투자신탁의 명칭

- 칸서스 하베스트 선취형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2. 효력발생일

- 2014.05.13

3. 변경사유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기구 결산으로 인한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의 변경, 재무정보,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운용실적,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도로명 주소 등 통계자료 갱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양식 추가

4. 신탁계약서 변경 내용

현 행	변 경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8.(생략) 9.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②(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8.(현행과 같음) 9.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②(현행과 같음)</p>
<p>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③(생략)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법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⑦(생략)</p>	<p>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⑦(현행과 같음)</p>
<p>제37조(수익자총회) ①~④(생략) ⑤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p>	<p>제37조(수익자총회) ①~④(현행과 같음) ⑤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p>

<p>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p>	<p>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p>
<p>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p>⑦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⑦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⑧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p>	<p>⑧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p>

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④(생략)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④(생략)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④(현행과 같음)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④(현행과 같음)

<p>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③(생략)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p>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생략)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p>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④(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p>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계약기간의 종료·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2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운용보고서”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로 본다.</p>	<p>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③(현행과 같음)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p>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④(현행과 같음) 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p>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계약기간의 종료·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2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
---	--

⑦~⑬(생략)	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⑦~⑬(현행과 같음)
---------	------------------------------

5.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 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 구의 연혁	2013.03.13기준	2014.03.13기준									
4.집합투자업 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9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9층									
5.투자운용인 력 가.운용전문인 력	책임운용인력 : 유승우 TI부문대표 부책임운용인력 : 차진호 리서치팀장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책임운용인력 : 김관오 주식운용본부장 부책임운용인력 : 최재혁 주식운용3팀장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1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나. 운용전문 인력 최근 3년 간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성명</th> <th>운용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책임운용 전문인력</td> <td>유승우</td> <td>2009.04 ~ 2014.02</td> </tr> <tr> <td>부책임운용 전문인력</td> <td>차진호</td> <td>2012.08 ~ 2014.02</td> </tr> </tbody> </table>	구분	성명	운용기간	책임운용 전문인력	유승우	2009.04 ~ 2014.02	부책임운용 전문인력	차진호	2012.08 ~ 2014.02
구분	성명	운용기간									
책임운용 전문인력	유승우	2009.04 ~ 2014.02									
부책임운용 전문인력	차진호	2012.08 ~ 2014.02									
8.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9.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시행령 제 268조제3항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9.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시행령 제 268조제4항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2013.03.13기준					2014.03.13기준																																
	구분	1년	3년	5년	10년	구분	1년	3년	5년	10년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3.03.13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증권거래비용은 2013.03.13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급비율(연간, %)</th> </tr> </thead> <tbody> <tr> <td>집합투자업자 보수</td> <td>연 0.654%</td> </tr> <tr> <td>판매회사 보수</td> <td>연 1.00%</td> </tr> <tr> <td>신탁업자 보수</td> <td>연 0.03%</td> </tr> <tr> <td>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td> <td>연 0.016%</td> </tr> <tr> <td>기타비용</td> <td>연 0.013%</td> </tr> <tr> <td>총 보수·비용</td> <td>연 1.713%</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654%	판매회사 보수	연 1.00%	신탁업자 보수	연 0.03%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16%	기타비용	연 0.013%	총 보수·비용	연 1.713%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급비율(연간, %)</th> </tr> </thead> <tbody> <tr> <td>집합투자업자 보수</td> <td>연 0.654%</td> </tr> <tr> <td>판매회사 보수</td> <td>연 1.000%</td> </tr> <tr> <td>신탁업자 보수</td> <td>연 0.030%</td> </tr> <tr> <td>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td> <td>연 0.016%</td> </tr> <tr> <td>기타비용</td> <td>연 0.003%</td> </tr> <tr> <td>총 보수·비용</td> <td>연 1.703%</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654%	판매회사 보수	연 1.000%	신탁업자 보수	연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16%	기타비용	연 0.003%	총 보수·비용	연 1.703%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654%																																					
판매회사 보수	연 1.00%																																					
신탁업자 보수	연 0.03%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16%																																					
기타비용	연 0.013%																																					
총 보수·비용	연 1.713%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654%																																					
판매회사 보수	연 1.000%																																					
신탁업자 보수	연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16%																																					
기타비용	연 0.003%																																					
총 보수·비용	연 1.703%																																					
<p>※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4.03.13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증권거래비용은 2014.03.13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집합투자증권발행분담금 부담주체가 2013.08.29기준으로 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업자로 변경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급비율(연간, %)</th> </tr> </thead> <tbody> <tr> <td>증권 거래 비용</td> <td>연 0.391%</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비율(연간, %)	증권 거래 비용	연 0.391%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급비율(연간, %)</th> </tr> </thead> <tbody> <tr> <td>증권 거래 비용</td> <td>연 0.446%</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비율(연간, %)	증권 거래 비용	연 0.446%																								
구분	지급비율(연간, %)																																					
증권 거래 비용	연 0.391%																																					
구분	지급비율(연간, %)																																					
증권 거래 비용	연 0.446%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년</th> <th>3년</th> <th>5년</th> <th>10년</th> </tr> </thead> <tbody> <tr> <td>하베스트선취형</td> <td>224</td> <td>601</td> <td>1,015</td> <td>2,247</td> </tr> </tbody> </table>	구분	1년	3년	5년	10년	하베스트선취형	224	601	1,015	2,247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년</th> <th>3년</th> <th>5년</th> <th>10년</th> </tr> </thead> <tbody> <tr> <td>하베스트선취형</td> <td>223</td> <td>597</td> <td>1,009</td> <td>2,234</td> </tr> </tbody> </table>	구분	1년	3년	5년	10년	하베스트선취형	223	597	1,009	2,234												
구분	1년	3년	5년	10년																																		
하베스트선취형	224	601	1,015	2,247																																		
구분	1년	3년	5년	10년																																		
하베스트선취형	223	597	1,009	2,234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013.03.13기준					2014.03.13기준																																
1. 요약재무																																						

정보									
2.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2013.03.13기준				2014.03.13기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2013.03.13기준				2014.03.13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2013.03.13기준				2014.03.13기준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2013.03.13기준				2014.03.13기준				
라. 운용자산 규모	2013.03.13기준				2014.03.13기준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명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번지 ☎ 1544-8000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대경빌딩) ☎ 02-756-0505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com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com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HSBC 펀드서비스		회사명		(주)HSBC 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6층 ☎ 02-3771-9800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HSBC빌딩 12층 ☎ 02-3771-98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r.hsbc.com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r.hsbc.com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평가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화재보험협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한국화재	

	399-3350	4층 ☎ 02-398-3900	회빌딩4층 ☎ 02-3215-1400		4층 ☎ 02-399-3350	4층 ☎ 02-782-1007	보험협회 빌딩 4층 ☎ 02-3215-145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kr	www.npricing.co.kr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kr	www.nicepni.com.kr	www.bond.co.kr
<p>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p> <p>가. 수익자총회 등</p> <p>(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⑤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p> <p>⑦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p>	<p>⑤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p>⑦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p>					

	<p>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습니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p> <p>⑧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합니다.</p>	<p>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습니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p> <p>⑧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봅니다.</p> <p>⑨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p>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탁계약서 제37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신탁계약서 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p>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탁계약서 제37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신탁계약서 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 청구권	<p>①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p>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p>가. 의무해지</p>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p>나. 임의해지</p>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3) 및 (4)의 사유로 임의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신탁계약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p>

	<p>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p> <p>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p> <p>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신탁계약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p>	<p>(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p> <p>(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p> <p>(3)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가. 정기보고서</p> <p>(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p> <p>□ 영업보고서</p>	<p>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이 기재된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p>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가. 정기보고서</p> <p>(2) 자산운용 보고서</p>	<p>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p>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p>나. 수시공시</p> <p>(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p>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p>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p>

	<p>1. 법 제87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p> <p>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p> <p>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p> <p>③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본문에 따른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본문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p>	<p>으로 정합니다.</p> <p>1.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p> <p>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p> <p>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p> <p>③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p>
--	---	---